고흥군의회 공고 제2021-30호

「고흥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였고,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 조례의 목적 조항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안 제4조)

○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5조 및 제6조)

○ 근무 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안 제8조)

○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운영의 위탁에 대한 근거 조항(안 제9조)

3. 자치법규안: 별도 붙임

4. 예고기간: 2021. 12. 22.~12. 27.(5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2. 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59542)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2) 전화: 061-830-6065, FAX: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고흥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고흥군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고흥군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직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직원
3.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직직원 등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샤워실 운영
2. 직원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펜션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단체 상해보험 가입
3.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4. 직장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지원
5. 국내·외 선진지 산업시찰 지원
6.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
7. 투병 중인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8.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 격려품 지급
9. 출산 장려를 위한 임신 직원 지원 및 자녀 출산 직원 격려금품 지원
10.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의장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근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연수,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은 제외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1조(통합 운영) 의장은 고흥군수와 협의하여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고흥군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흥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